

□ 목적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 고용 창출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지원제외(불임) 직무 외의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6개월간 고용유지+고용 후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 증가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42개 직무 제외, 불임 참고)*에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불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에 고용한 경우 지원하지 않음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

* 성립일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까지 6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까지 월평균 피보험자 수로 하고, 월평균 피보험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일용근로자는 제외)

<피보험자 수 초과 여부 판단 기준>

▲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참여 신청일(사업계획서 접수일): '23.1.5.

▲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 받은 날: '23.2.28.(승인인원: 3명)

▲ A근로자 고용일('23.3.15.), B근로자 고용일('23.4.10.), C근로자 고용일('23.4.20.)

▲ '22.7월~12월 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5명이고, '23.3월~8월 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5.3명인 경우 A, B, C 근로자 모두 지급 대상으로 인정

- (지원내용)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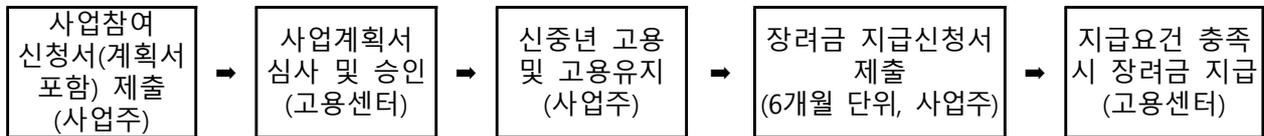
○ (지원한도)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소수점 이하 버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이내로 지원

○ (지급기간 및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급

| 구분 | 연간총액 | 6개월 지급액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960만원 | 480만원 |
| 중견기업 | 480만원 | 240만원 |

* 6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6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단위기간별로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하지 않음)

○ (지원절차) 사업참여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아야 지원함



*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번호(☎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서 확인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 분류기준

|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
|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C | 500명 이하 |
| 2. 광업 | B | 300명 이하 |
| 3. 건설업 | F | |
| 4. 운수 및 창고업 | H | |
| 5. 정보통신업 | J | |
|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N |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9. 도매 및 소매업 | G | |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 11. 금융 및 보험업 | K |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 13. 그 밖의 업종 | | 100명 이하 |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 중견기업 분류기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formek.or.kr)에 가입된 기업

붙임 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

| 지원제외 사유 |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 | | | |
|---|-----------------------|------------------------------------|-----|---|
| ① 50세 이상 비중이 높아 취업이 용이한 직무(19개) | 011 |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 014 |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
| | 232 |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 233 |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
| | 531 | 주방장 및 조리사 | 542 | 경비원 |
| | 550 | 돌봄 서비스 종사자(요양보호사, 간병인, 육아도우미 등) | 561 |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
| | 562 |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622 | 자동차 운전원 (택시·버스·화물차·특수차 등) |
| | 704 |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 705 |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광원·채석원·석재절단원·철로설치 및 보수기타 채굴토목 종사원 등 |
| | 861 |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용 | 862 |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 | 863 |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901 | 작물재배 종사자(조경원 포함) |
| | 903 | 임업 종사자 | 904 | 어업 종사자 |
| | 905 |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
| ② 전문성·경험·노하우를 요구하지 않는 저숙련 직무(10개) | 523 | 숙박시설 서비스원 (도어맨·룸서비스맨·벨맨 등) | 524 | 오락시설 서비스원 (노래방·PC방 등) |
| | 532 | 식당 서비스원(음식 배달원 포함) | 613 | 텔레마케터 |
| | 615 | 판매 종사자 (가스충전·주유원 포함) | 616 | 매장 계산원 및 대표원 |
| | 617 |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 624 |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납품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배송기사, 배송운전원, 퀵서비스 배달원, 택배배달원·분류원, 우편물 집배원, 선박승무원, 하역·적재 종사원, 기타 배달원 등) |
| | 706 |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 890 | 제조 단순 종사자 |
| ③ 학위, 면허, 전문자격 등 취득으로 취업이 가능하여 정부지원 필요성이 낮은 직무(9개) | 023 |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 211 | 대학 교수 및 강사 |
| | 212 | 학교 교사 | 221 | 법률 전문가(변호사·변리사 등) |
| | 301 |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 302 | 수익사 |
| | 303 | 약사 및 한약사 | 414 |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
| | 621 |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 | |
| ④ 국가, 지자체, 공공 기관의 직무(4개) | 021 |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 025 | 정부·공공행정 사무원 |
| | 240 |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250 | 군인 |

참고 2

신증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1.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채용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고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 고용한 경우에 한해 소급하여 지원 가능(이 경우에도 사업계획 불승인 시 지원하지 않음)
2. 사업참여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 단, 위의 이행기간 전일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
3. 사업계획 승인 후 고용하였으나 지원이 불가능한 근로자 유형
 -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과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 ①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 ②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 청년유형 제외, (구)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중 아래 유형 해당자
 -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건설일용직 ㉨ 장애인 ㉩ 니트(NEET)족
-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④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이수한 사람
- ⑥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
- ⑦ 자활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 ②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④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4. 제외 사업주

-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 (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 ※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경영형태 및 지배구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으로 분류

-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탱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와 지원 대상자가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개월 이하 단기 일자리 사업을 통해 근무한 사업장(일자리 사업 참여 이전 동일 사업장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과 사업종료 후 단절 기간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한 경우는 제외

- ⑥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 전 사업주가 고용한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나.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다.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⑦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⑧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청 기간(제척기간)*을 지나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 사업주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⑨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지급대상자의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수

-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는 감원방지 의무 위반임
- ※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고용된 자 포함)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 ※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아니함

<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

- ❖ 중분류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
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 상실사유 중분류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참고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현장 접수(방법1) 또는 온라인 접수(방법2)에 따라 신청

- (방법1) 참여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 등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

* 붙임 2 <전국 고용센터 현황>을 참고

- (방법2)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화면 상단 기업서비스 클릭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클릭 후 계획신고서 부분을 작성 및 첨부서류를 붙임파일로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 경로

인증센터 | 고객센터 | 용어사전 | 자료실 | 원격제어 | 화면크기 - 100% +

E 고용보험 개인서비스 기업서비스 고용보험 제도 통계 및 정보공개

| | | |
|--|---|---|
| <p>고용창출장려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처리현황 60세이상 고령자고용 고령자 고용연장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 고용촉진장려금 사전신청서 고용촉진 국내복귀기업 고용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li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일자리함께하기 교대제 개편 일자리함께하기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함께하기 일자리 순환제 주 근로시간 단축 지역고용촉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추가고용 <p>장년근로시간단축 사업주</p> <p>직장어린이집</p> <p>임금피크제</p> <p>상생고용지원</p> <p>세대간 상생 지원금</p> | <p>고용안정장려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처리현황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사내하도급근로자 정규직 전환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정규직 전환 워라밸일자리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원격근무 유연근무제 선택근무 일생활 균형 근무혁신 인프라 일생활 균형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출산육아기 <p>고용유지지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처리현황 고용유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휴업 고용유지 휴직 <p>대량고용변동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처리현황 대량고용변동신고 | <p>모성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처리현황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대위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p>이직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처리현황 이직신고 미전송 이직신고서 일괄 전송 <p>대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처리현황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 대리인 현황 조회 <p>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및 출력 전자통지서 수신현황 조회 반환액 및 납부(가상)계좌번호 조회 |
|--|---|---|

전국 고용센터 현황

| | 주소 | 담당 지역 | 대표번호 |
|--------------|---|--|--|
|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0, 9층 기업지원과 |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 | 02-2004-7394~5, 7910~1 |
| 서울서초 고용복지*센터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 서울특별시 서초구 | 02-580-4972~5, 4922, 4940, 4977~4979 |
| 서울강남 고용복지*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10층 | 서울특별시 강남구 | 02-3468-4703, 4708, 4709, 4711~4716, 4721, 4732, 4737, 4784, 4787, 4845 |
| 서울동부 고용복지*센터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7층 기업지원팀 |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 | 02-2142-8420, 8426, 8429, 8433~5, 8443, 8456, 8474, 8896, 8404 |
| 서울서부 고용복지*센터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8층 810호 (도화동, 삼창프라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 02-2077-3410, 3422, 6001, 6003~5, 6025, 6030, 6034, 6065 |
| 서울남부 고용복지*센터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9층 (코레일유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 | 02-2639-2403~2404, 2411, 2413, 2415, 2333, 2162, 2435 |
|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60, 2층 | 서울특별시 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성북구 | 02-2171-1833, 1800~5 |
| 서울관악 고용복지*센터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릉85포스트타워 3차 2층 | 서울특별시 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 02-3282-9249, 9353, 9361, 9366, 9379, 9384~6, 9396 9388~9, 9393~4, 9338 9309, 9331, 9219, 9348, 9220, 9233, 9215 |
| 인천 고용복지*센터 |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과 |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및 옹진군 | 032-460-4671~81, 032-460-4683~4, 4686~7, 4689, 4564, 4623, 4723, 4628, 4583, 4560, 4585 |
| 인천북부 고용복지*센터 |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기업지원팀 |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 | 032-540-5641 |
| 인천서부 고용복지*센터 | 인천시 서구 이음1로 389 에이플러스 빌딩 5층 기업지원팀 |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 | 032-540-2050 032-540-2051~3 |
| 부천 고용복지*센터 | 부천시 길주로 351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팀 | 경기도 부천시 | 032-320-8972~5, 8927, 8952, 032-310-8855 |
| 김포 고용복지*센터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기업지원팀 | 경기도 김포시 | 031-999-0939~ 031-999-0942 |
| 고양 고용복지*센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기업지원팀 |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 031-920-3937 031-920-3962/3964 3957/3988/3997~3998 |
| 의정부 고용복지*센터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2층 기업지원팀(가능2동 754) | 경기도 의정부시·포천시·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강원도 철원군 | 031-828-0832~4 0893, 0813, 0838 |
| 수원 고용복지*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0 2층 기업지원팀 |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 | 031-231-7864 |
| 성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 경기도 성남시·광주시 | 031-739-3170~3 |

| | 주소 | 담당 지역 | 대표번호 |
|-----------------|--|--|--|
| *센터 | 성남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 양평군·이천시·여주시 하남시 | 3122, 4991, 4916, 3160, 3163, 3178 (유지-4907,3136,4992,4936) |
| 안양 고용복지*센터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세포스빌타워 2층 기업지원팀 | 경기도 안양시·과천시 광명시·의왕시·군포시 | 031-463-0761~5, 0767, 0769, 0729 |
| 안산 고용복지*센터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안산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 고용안정상담: 031-412-6940~6945, 6948,6949 고용유지상담: 031-412-6946~6947 |
| 평택 고용복지*센터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 3층 평택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경기도 평택시·오산시·안성시 | 031-646-1205 |
| 춘천 고용복지*센터 |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4층 기업지원팀 | 강원도 춘천시·화천군·홍천군·양구군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 033-250-1947, 250-1930, 250-1924 |
| 강릉 고용복지*센터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강릉고용센터 1층 | 강원도 강릉시·동해시 | 033-610-1913 |
| 속초 고용복지*센터 |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조양동) 속초고용센터 | 강원도 속초시·고성·양양군 | 033-630-1909, 1932 |
| 원주 고용복지*센터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 강원도 원주시·횡성군 | 033-769-0960, 0942~3, 0946, 0954, 0958, 0946, 0951 |
| 태백 고용복지*센터 |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 강원도 태백시 | 033-550-8633 |
| 삼척 고용복지*센터 |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4층 | 강원도 삼척시 | 033-570-1906 033-570-1910 |
| 영월 고용복지*센터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영월고용복지+센터(2층) | 강원도 영월군·정선군·평창군 | 033-371-6254 033-371-6261 |
| 부산 고용복지*센터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부산고용복지 센터 3층 기업지원과 |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 영도구·남구·부산진구·연제구 ·사하구 | 051-860-1923~7, 1931, 1979, 2072, 2100 |
| 부산동부 고용복지*센터 | 부산 수영구 수영로 685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별관 7층 기업지원팀 | 부산광역시 동래구·금정구· 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 051-760-7244~7247,7288 051-760-7214,7216,7282,721 0 |
| 부산북부 고용복지*센터 |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강서구 | 051-330-9970~2, 9945, 9952~5, 9922~3 |
| 창원 고용복지*센터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고용센터 8층 기업지원팀 | 경상남도 창원시·함안군·의령군·창녕군 | 055-239-0960 |
| 울산 고용복지*센터 |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138(옥산빌딩) 9층 기업지원팀 | 울산광역시 | 052-228-1922~4, 1926, 1942 |
| 김해 고용복지*센터 |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김해고용복지+센터 4층 |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 055-330-6434~6 |
| 양산 고용복지*센터 | 경남 양산시 양산역로 103, 5층 기업지원팀 | 경상남도 양산시 | 055-379-2430, 2431, 2422, 2472 |
| 진주 고용복지*센터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 2층 고용노동부 진주지청(별관) 기업지원팀 |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산청군, 하동군·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055-760-6751 |
| 통영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고성군 | 055-650-1811~3 |

| | 주소 | 담당 지역 | 대표번호 |
|-----------------|---|--|---|
| *센터 | 통영고용복지 센터 3층 기업지원팀 | | |
| 대구 고용복지*센터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 | 대구광역시 중구·수성구·동구, 경산시·영천시·군위군·청도군 | 053-667-6006 |
| 대구서부 고용복지*센터 | 대구 서구 서대구로 3(내당동) DBS빌딩, 7층 | 대구광역시 남구, 서구·달서구 | 053-605-6460~6,, 6477 ,6479 |
| 대구달성 고용복지*센터 |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 053-605-9518~9 |
| 칠곡 고용복지*센터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층 | 경상북도 칠곡군, 성주군 | 054-970-1906~8 |
| 포항 고용복지*센터 |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 경상북도 포항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 054-280-3051~2, 3055~7, 3070, 3077, 3132 |
| 경주 고용복지*센터 | 경주시 원화로 396 7층 | 경상북도 경주시 | 054-778-2500 |
| 구미 고용복지*센터 | 구미시 백산로118 구미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 |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 054-440-3360~4 |
| 영주 고용복지*센터 |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2층 | 경상북도 영주시·봉화군 | 054-639-1146 |
| 문경 고용복지*센터 |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 | 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 | 054-559-8231 |
| 안동 고용복지*센터 |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 의성군·청송군·영양군 | 054-851-8062 |
| 광주 고용복지*센터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7층) |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 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 | 062-609-8500 |
| 광주광산 고용복지*센터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2층)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함평군 | 062-960-3206~8 |
| 전주 고용복지*센터 |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전주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 전라북도 전주시·무주군· 장수군·진안군·완주군·임실군 | 063-270-9210 |
| 남원 고용복지*센터 | 남원시 향단로 39, 남원고용복지+센터 |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 063-630-3917 |
| 정읍 고용복지*센터 |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정읍고용복지+센터 | 전라북도 정읍시 | 063-530-7501 |
| 익산 고용복지*센터 |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 전라북도 익산시 | 063-840-6523~4, 6507, 6551, 6553 |
| 김제 고용복지*센터 | 김제시 화동길 105 | 전라북도 김제시 | 063-540-8404, 8406 |
| 군산 고용복지*센터 |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전라북도 군산시 | 063-450-0634, 0636~9 0626, 0648, 0655, |
| 부안 고용복지*센터 | 부안군 번영로 145, 2층 부안고용복지+센터 | 전라북도 부안군·고창군 | 063-580-0515 |
| 순천 고용복지*센터 |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 전라남도 순천시·보성군·고흥군 | 061-720-9164 |
| 여수 |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 전라남도 여수시 | 061-650-0155 |

| | 주소 | 담당 지역 | 대표번호 |
|---------------|--|---|-----------------------------------|
| *센터 | | | |
| 광양 고용복지+센터 |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8층 커뮤니티센터 8층 | 전라남도 광양시 | 061-798-1908 |
| 목포 고용복지+센터 | 전남 목포시 평화로 5번지 4층 |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 신안군·영암군·진도군 | 061-280-0541~2, 0564, 0552 |
| 해남 고용복지+센터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 전라남도 강진군·해남군· 완도군·장흥군 | 061-530-2912, 2905 |
| 대전 고용복지+센터 | 대전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2층 기업지원과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 042-480-6432~39, 6012~19 |
| 공주 고용복지+센터 | 충남 공주시 변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4층 | 충청남도 공주시 | 041-851-8507 |
| 논산 고용복지+센터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 | 041-731-8601, 8661 |
| 세종 고용복지+센터 |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60번지 3층 | 세종특별자치시 | 044-861-8992~3 |
| 청주 고용복지+센터 |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비와이씨 청주분평빌딩 7층 |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보은군 ·증평군·옥천군·영동군 | 043-229-0704~0709, 0720 |
| 천안 고용복지+센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층 |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 아산시·예산군 | 041-620-7400 |
| 충주 고용복지+센터 |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봉방동) 세일빌딩 4층 기업지원팀 | 충청북도 충주시·음성군 | 043-850-4030, 4032, 4035, 4076 |
| 제천 고용복지+센터 |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화산동, 제천고용센터) |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 043-640-9322 |
| 보령 고용복지+센터 |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보령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 부여군·홍성군·청양군 | 041-930-6255, 6259 6243 |
| 서산 고용복지+센터 |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서산고용복지+센터 5층 |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 041-661-5614 |
| 제주 고용복지+센터 |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센터 2층 | 제주시·서귀포시 | 064-710-4462, 4470 |